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제3선거구 강동길 의원입니다.

○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1조 제1항 제5호 및  
제6호에 따른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의 해제동의 비율을  
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비율은 2분의  
1 이상,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비율은 3분의  
2 이상으로 하고,

-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직권해제된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 중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비율을 70%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